

1997. 2.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 충주시 충주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충주시 시설 연관 사무 소설 치 조례 증개정 조례안
- 충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증개정 조례안
- 충주시 여성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증개정 조례안

총무위원회

제정 및 개정 조례 안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자
충주시 충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7. 1. 27	'97. 1. 29	'97. 2. 13	'97. 2. 14	시장과장
충주시 서을연 학사부 소설 치조례 증개정조례안	"	'97. 2. 1	"	"	"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 례 증개정조례안	'97. 1. 31	"	"	"	"
충주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증개정조례안	"	"	"	"	여성회관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 충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설명

- 관내 읍·면·농촌 등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지 않고
마음 놓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주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학사 설치 및 운영

- 충주시장이 설치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공익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입사생선발 및 관리, 직원, 학사재무회계에 관한 사항등은 운영규정으로
정함.

○ 재정운영 및 지원

-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입학생 부담금, 기타수입으로 충당
- 위탁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보조
- 운영상황을 년2회 지도감독 및 검사

나.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설명

-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의 업무중 통상교류증진, 투자유치, 관로개척등 전문분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골자

- 통상교류증진, 투자유치, 관로개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을 위촉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음.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함.

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설명

- 신청사 이전이 다가옴에 따라 청사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읍·면지역 청소구역 광역화에 따른 청소차운전원 잉여인력을 본청 유보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본 청 554명 → 565명으로 11명 증
- 사업소 153명 → 147명으로 6명 감
- 읍·면 514명 → 509명으로 5명 감

복사.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설명

-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익증대로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용료 인상조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제한 및 사용허가 조항신설 (안제6조, 제7조)
- 경영수익 증대로 시민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여성회관 사용료 인상
 - 일반시설 : 대회의실, 예식실, 차동징수 (평균 50%)
 - * 평일 사용시 50% 할인
 - 특별시설 사용료 징수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충주학사를 충주시장이 직접운영하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공익법인에게 위탁운영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2의 조문에 맞도록 위탁운영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 조례제정안 제4조 제2항의 입사행 선발및 관리에 있어 읍·면·농촌등의 중·고등학생 및 남·여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른 사항은 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며
- 학사운영과 관련된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충주시 물품관리조례등에 대한 문제가 야기 되었을때 위탁운영을 해지 할수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수정보완하는 방안과

-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위반시 위탁운영을 해지할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하는 방안을 제시함.

나.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서울연락사무소에서 중앙정책의 흐름이나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시정시책에 적절하게 활용하므로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이러한 수집활동이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명분있고 체계적인 정보 및 자료 수집을 할수 있는 고문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시정시책 협조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와 신설되는 제6조 제1항의 경우 위촉할수 있는 고문의 수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신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각종 기계설비의 관리인력을 보강하고 읍면청소차 운전원을 감축하여 유보정원으로 관리하고,
- 신축 청사의 각종 기계설비등에 자격요건을 구비한 기술인력을 관리부서에 배치 하므로서 청사관리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임.
- 또한 읍면지역의 청소구역을 2개면씩 묶어 광역화하여 이에 따른 유보정원을 조직관리담당부서에서 관리하여 보강인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정된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라.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 여성회관 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6조의 사용허가 제한은 사용허가전에 사용자의 사용목적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7조의 사용허가취소는 사용허가후 사용자가 관계법령및 사용목적 위반시 제재를 취할수 있는 내용이며,

- 여성회관 사용료인상은 평균 50% 인상하여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나 시중 예식장과 비교할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 할때 시중 예식장 사용료의 80% 수준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요지

가. 충주시총주학사설지및운영에관한조례안

(질 의)

- 위탁관리 법인대상은 ?

☞ 답변

- 사단법인 충주시 장학회에 위탁계획임.

{ 질 의 }

- 조례안 제6조의 규정관련 사항으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시 제재하는 방안은?

☞ 답변

- 운영규정이나 계약시에 삽입하는 것으로 할 것임.

(질 의)

- 운영은 장학회에서 맡고 책임자는 교육계원으로 위촉시 운영에 문제 없는가?

▣ 답 변

- 운영 방안을 이사회에서 결의하므로 문제 없다고 봄.

(질 의)

- 남·여학생을 같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남학생만 수용할 계획인가?

▣ 답 변

- 남학생만 우선 수용할 계획이며 추후 여학생 수용을 하도록 하겠음.

(질 의)

-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충주시 장학회가 공익법인으로 승인 받을수 있나?

▣ 답 변

- 충주시 장학회가 기히 사단법인으로 승인을 받았음.

(질 의)

- 입사생 부담금과 시비지원금의 비율은?

▣ 답 변

- 50 : 50 입.

나.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질 의)

- 제6조 고문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너무 광범위함 예산범위는?

▣ 답 변

- 수당지급규정에 의거 의회 예산승인을 얻어 지급할 계획임.

(질 의)

- 6급직원을 임명 하였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 답 변

- '96정기회의시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바 있으나 계수또는 계량상 실적을 내기는 어려움.

(질 의)

- 서울연락사무소장 발령을 유보하고 고문을 위촉할 계획인가?

▣ 답 변

- 우선 고문을 위촉하여 운용할 계획임.

(질의)

- 시정시책현조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나?

▣ 답변

- 6개월간 지급 하였음.

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질의)

- 상모면에 청소차 기사 1명을 감원할 경우 문제없나?

▣ 답변

- 상모면은 현재 3명이 있으며, 청소차량 기사조정은 해당 청소과에서 인력 판단을 하여 조정하였음.

(질의)

- 시립도서관의 사서직 8급 1명과, 박물관 전기직 1명을 감할 경우 문제없나?

▣ 답변

- 현 박물관이 전기시설물을 관리할 만한 시설이 아니며, 시립도서관 사서직은 한시정원임.

④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질의)

- 여성회관 사용료인상 금액을 시중예식장 사용료의 15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봄.

▣ 답변

- 평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금액을 인상코자하는 것임.

(질의)

- 충주시내 일반업소와 여성회관을 비교할때 예식횟수는 증가되고 있나?

▣ 답변

- '96년도에 시설을 보완정비하여 증가 추세임.

(질의)

- 전국적으로 우리와 비교해 보았나?

▣ 답변

- 타지역은 우리와 같이 여성회관을 예식시설로 활용하는 곳이 거의없음.

5. 수정안 요지

▣ 조례명 :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1항 중 "고문을 위촉할수 있다"를 "고문1인을 위촉할수 있다"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

개정안	수정안
제1조 - 제5조 (생략)	제1조 - 제5조 (원안과 같음)
제6조(고문) ① 시장은 통상교류증진, 투자유치, 관로개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을 위촉할수있다. ② - ④ (생략)	제6조(고문) ① 고문1인을 위촉할수 있다. ② - ④ (원안과 같음)
제7조 (생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부칙 (생략)	부칙 (원안과 같음)

6. 심사결과

가.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나.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수정안 가결

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라.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불임

가.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나.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라.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민인 재학생에 대하여 수학상의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충주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위치) 학사는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487-1번지에 둔다.
- 제 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사생에 대한 숙식제공등 수학에 따른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기타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 제 4조(운영) ① 학사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공익법인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사생 선발 및 관리, 학사원장 및 관리직원에 관한 사항등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규정을 정한다.
- 제 5조(지원및 재정운영) ①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년도 운영 계획서를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년도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조(사업승인등)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사시설의 일부를 목적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입사생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3.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제 8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 학사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학사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학사의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게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조(준용규정) 학사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주시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7조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고문) ① 시장은 통상교류증진, 투자유치, 관로개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날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554"명을 "565"명으로, 제4호중 "153"명을 "147"명으로, 제5호 중 "514"명을 "509"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1조를 제8조 내지 제13조로 하고, 제8조(종전의 제6조)제목 "(사용료)"를 "(사용료징수)"로 하며, 제6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신청자가 제7조 제1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된 사유로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4.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사용허가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제1항 중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충주시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수료 기준액

사용시설기준	기 준	기 본 료	비 고
1. 시설사용료			
◦ 대회의실	4 시간	50,000원	- 기본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매시간마다 기본료의 20/100을 가산한다.
◦ 소회의실	4 시간	25,000원	- 슬라이드 및 영화를 상영할 때에는 기본료의 20/100을 가산한다.
◦ 식 당	1 일	40,000원	- 특수기물을 상영할 때에는 기본료의 20/100을 가산한다.
◦ 교양강습실	4 시간	25,000원	
2. 예식실			
◦ 식장 사용료	1 시간	90,000원	- 평일 사용시 예식·폐백실 사용료 50% 할인
◦ 폐 백 실	1 시간	25,000원	
◦ 기타재료대	5 종	20,000원	
3. 식 당			
◦ 백 반	1 식	- 시중요금의 80/100이하	
◦ 국 수	1 식	- 시중요금의 80/100이하	
4. 교양교육			
◦ 기술·취미 교 실	1인 1월	10,000원	
◦ 기타교육			
5. 부대시설			
◦ 피아노사용료	1 회	10,000원	- 매시간 초과시 기본료의 50% 가산
◦ 연 료 대 (냉·난방)	1회/1시간	대회의실 20,000원	
◦ 특별사용료 (시설사용수수료)	1건/1회	기타10,000원 사진30,000원 비디오 10,000원	- 예식장 운영시 자율화로 인한 시설 사용 업주 부담